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51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정호·이수진·최기상

박희승 • 전진숙 • 이연희

윤후덕 • 정성호 • 임미애

허종식 · 이훈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'행위태양'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, 법제처는 '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'에서 '태양'을 '모습이나 형태'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이에 '행위태양'을 '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'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).



법률 제 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의 제목 중 "행위태양"을 "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"을 "침해행위의 구체적 배용·방식·형태 등"으로, "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"을 "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구체적 행위태양"을 "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"행위태양"을 "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"행위태양"을 "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"을 "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"을 "자기의 구체적 행위대양"을 "지기의 구체적 행위의 대용·방식·형태등"으로, "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"을 "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·방식·형태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(구체적 행위태양 제 제126조의2(구체적 행위의 내용 ·방식·형태 등 제시 의무) 시 의무) ①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-----침 해 행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 위의 구체적 내용・방식・형태 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하다. 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・방식 · 형태 등-----.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<u>구체적 행위</u> -----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-----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

32조제3항 중 "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"를 "구체적 <u>행위태양</u>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"로 한다.

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<u>행위의</u>
<u>내용・방식・형태 등</u>
4
-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・
<u>방식·형태 등</u>
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・방식
<u>· 형태 등</u>